

수수료부과기준

제1조 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"법"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 규정,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자산/투자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
가. 보수

- 1) 운용보수(투자보수, 매입보수)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써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- 2) 성과보수(또는 매각보수)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(법 제86조, 동법 시행령 제 8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-65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가능)
- 3) 판매회사 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4) 신탁업자 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 보관자로서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- 5)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을 대신해준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
나. 수수료

- 1)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
- 2) 환매수수료 : 펀드 가입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

제4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

가.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나.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을 일관되게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

보수 및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, 포트폴리오의 규모, 요구되어지는 서비스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투자자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
제6조 (수수료의 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 (수수료의 고지) 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,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 (수수료의 인상)

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9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,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9조 (공시)

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지침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지침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